

복지용구 대여품목 및 내구연한

대여품목

(내구연한)



수동휠체어

5년



이동욕조

5년



배회감지기

5년



목욕리프트

3년



수동침대

10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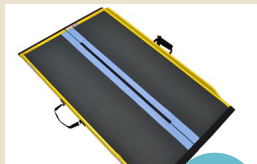
전동침대

10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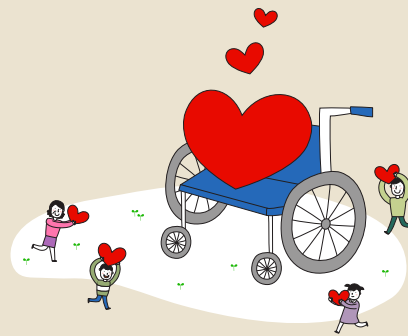
욕창예방매트리스

3년



경사로

8년



복지용구 신고센터

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에 대하여
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
'복지용구 신고센터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◆ 신고할 수 있는 사람

- 전 국민 누구나 가능

◆ 신고내용

- ① 복지용구 제품 가격 신고
- ②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면제·감경 신고
- ③ 복지용구 안전사고 신고
- ④ 복지용구 기타 신고

◆ 신고방법

- 인터넷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가능
(www.longtermcare.or.kr → 개인서비스 → 복지용구신고센터)
- 우 편 :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, 25층
(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) 요양급여실
복지용구부
- 팩 스 : 033 - 749 - 6378

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
품격높은 장기요양보험

복지용구
급여이용안내

복지용구 구입품목 및 내구연한

구입품목

(내구연한·연한도내 구입가능갯수)



이동변기

5년



목욕의자

5년



성인용보행기

5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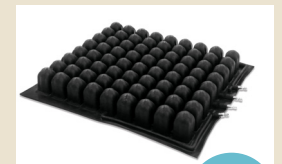
안전손잡이

4개
한도

간이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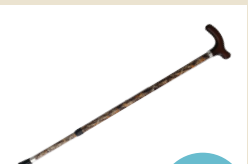
2개
한도

자세변환용구

5개
한도

욕창예방방석

3년



지팡이

2년

미끄럼방지용품
(양말)

6켢레

미끄럼방지용품
(매트·액)5개
한도



복지용구 급여 이용절차

복지용구 계약전 확인사항



❶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
❷ 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〈복지용구급여확인서〉

- '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'만 이용가능
- 연 한도액 적용구간 : 연 한도액이 적용되는 기간

❸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.

〈연 한도액 적용방법〉

-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 적용
-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 한도액을 초과하면, 초과한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복지용구 계약



❶ 복지용구사업소에 방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.
• 계약서 2부 작성(사업소 보관 1부, 수급자 발급 1부)

급여방식

- 구입 :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- 대여 :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

❷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·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·승인 후 급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

- 복지용구사업소(장기요양기관) 정보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」 ▶ 「검색서비스」 ▶ 「장기요양기관 찾기」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복지용구 이용



❶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급여비용 본인부담률

일반대상자	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
15%	7.5%	면제

❷ 복지용구 이용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로 시설 입소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불가합니다.
-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·수동침대·이동욕조·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합니다.
-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예) 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: 수동휠체어, 지팡이



내구연한

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 ... 2017.7.1. 시행

제품을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

❶ 2017년 7월부터는 내구연한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으나,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 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

• 예) 수동휠체어

내구연한(5년)+연장대여기간(2.5년)
: 최대 7.5년 대여가능

• 연장대여기간 동안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'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'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•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을 연장대여하는 기간에는 기존 월 대여료보다 인하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※ 내구연한 경과 제품을 계약할 경우 SMS로 해당내용이 안내됩니다.

